

2019. 1. 17 개정

2019. 2. 28 개정

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9-약관-002호(2019. 1. 9)

「함께하는 사랑 통장」 특약

제1조 적용범위

“함께하는 사랑 통장(이하 “이 예금”이라 함)”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『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』, 『예금거래 기본약관』을 적용한다.

제2조 예금과목

이 예금의 예금종류는 저축예금 또는 기업자유예금으로 한다.

제3조 예금종류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(개인사업자 포함) 또는 법인으로 하며, 고객당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다.

제4조 이자지급

- ①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예금의 이자는 기준일(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의 제3금요일)에 셈하여 기준일에 이온 익일(이하 ‘원가일’이라 한다)에 원금에 더한다.
- ② 제1항의 예금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 계산기간으로 하고,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매 영업일에 영업점에 게시하는 이율로 계산한다.

제5조 수수료 우대서비스

은행은 개인가입자에 대해 아래에 명시된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요건(이하 “우대요건”이라 한다)의 월별실적을 가입 다음월부터 매월 평가하여 우대요건 중 1건 충족하는 경우 충족한 월의 다음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2호의 수수료 우대서비스 I을 제공하며, 우대요건 중 2건 이상 충족하는 경우는 제2호 및 제3호의 수수료 우대서비스 I,II를 제공한다.
단, 신규 가입월 및 다음월은 요건 충족에 관계없이 우대서비스 I을 횟수 제한 없이 제공한다.

- 1.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요건
 - 가. ‘함께하는 사랑 적금’ 보유
 - 나. ‘급여’, ‘연금(국민/공무원/군인/사학/기초/보훈/산재/시타연금 등)’, ‘가맹점대금(BC/하나)’ 중 한가지 이상 이 예금으로 이체
 - 다. ‘아파트 관리비’ 또는 ‘하나카드와 당행 제휴 카드사의 신용(체크)카드를 합하여 월 10만원 이상’ 이 예금에서 결제
 - 라. 이 예금에서 공과금 2건 이상 자동이체
- 2. 수수료 우대서비스 I대상거래 및 우대내용
 - (횟수 제한 없이 제공되는 것이 원칙이나, 제1호의 ‘가’목의 조건만 만족하는 경우 월 10회만

제공)

- 가. 이 예금에서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거래 시 수수료 면제
- 나. 이 예금에서 당행 자동화기기, 인터넷뱅킹, 폰뱅킹(ARS), 1Q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 시 수수료 면제
- 다. 이 예금에서 납부자이체(타행이체 포함) 시 수수료 면제
- 라. 이 예금의 통장 재발행 시 수수료 면제

3. 수수료 우대서비스 II대상거래 및 우대내용 (총합 월 10회 제공)

- 가. 창구에서 당행이체 및 타행이체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
- 나. 폰뱅킹(상담원)을 통한 당행이체 및 타행이체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
- 다.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 인출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
(단, 은행 외부 장소에 설치된 타행 제휴CD 및 VAN사 CD기에서 출금하는 경우는 제외)

제 6조 기타

- ① 고객이 은행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를 지정하여 등록한 경우 (등록 후 협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) 은행은 2019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해당 계좌들의 연 평균 잔액의 0.1%를 자체 출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에 후원금을 제공한다.
- ② 제1항의 후원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'함께하는 사랑 통장'이 5백좌 이상인 경우에만 제공한다.